

박근혜 정부 1년, 경제민주화 중단 · 대기업 규제 완화 강행

을의 눈물 멈추었나?

갑을개혁 운동 1년을 평가한다

일시 | 2014년 5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목차

갑을문제는 왜 생겼는가 이선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03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07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갑을 피해사례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14
표1 2013년 대기업의 불공정·불법·부당행위 관련 행정처분 및 소송 현황	23
표2 2012~2013경제민주화-을살리기 주요 활동 현황	24
공정위 불공정근절 과제 이행 및 의지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팀장	29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역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¹⁾ 공동사무처장	34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2014년 2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를 재편하여, 싱크탱크·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단체·지역NGO 등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견제하고 비판하는 활동, 또 경제민주화의 지역적·전국적 실현 등을 위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지역 경제민주화 대회를 열었고, 향후 광주지역 경제민주화 대회 등 전국을 순회하는 경제민주화 대회도 기획하고 있고, 재벌·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고발하고 공론화하는 데에도 변함없이 앞장서나갈 것입니다. 현재 사무국은 참여연대(담당 :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갑을문제는 왜 생겼는가

이선근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민생연대 대표)

1. 갑을문제는 왜 생겼는가

2012년 총선부터 경제민주화 정책경쟁과 거의 동시에 갑을문제가 터져 나왔다. 숨죽이고 있던 을들이 남양유업 등을 시작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문제가 순방향으로 풀려가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상품생산이 발달된 경제시스템이다.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심지어 노동자의 노동마저도 상품화되어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는 아무리 사소한 상품의 거래라도 계약관계라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갑을의 계약관계를 사적 자치로 방치하면 힘이 센 측 즉 갑이 자본집중의 자본운동의 원리에 따라 을의 권리를 압살하고 축적을 강행한다. 그러면 사회의 모든 부는 슈퍼갑의 수중으로 들어가 노동자에 대한 수탈이 진행된다 급기야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수탈로까지 진행된다.

IMF이후 재벌대기업의 문제점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집권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질적 개혁을 포기한 채 양적 개혁 즉 부채비율 200%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당시 재벌들의 재무구조에서는 정말 자신들

을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중소기업의 배제로 이윤율을 높여 그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아웃소싱과 비정규직화를 필두로 한 구조조정은 노동계급의 가난을 급속도로 진전시켰다. 그러자 쫓겨난 노동자들은 대거 자영업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들고 진출하게 되었다. 자영업에서 무한경쟁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유통상인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을 무한정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풀뿌리경제를 지탱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기술약탈, 납품가후려치기 등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빼앗아버렸다. 어느 순간 중소기업은 기술개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 갑을관계 대등성의 상실

무리한 양적 개혁을 내세웠던 정권들은 얼마 못가 재벌들에게 항복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선진국들조차 실현하지 못할 정도의 무제한 자본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 결과 CEO가 나서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MB가 선출되었으나 오히려 갑을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즉 대자본 운동에 대한 규제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정책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를 틈탄 재벌대기업들은 거래상대방을 대등한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납품업체 경영지원을 핑계로 재벌대기업의 직원은 중소기업의 장부를 낱알이 훑어보는 권한을 갖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조차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 이윤을 남길 수 없도록 해마다 납품가격인하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술개발을 이룬 중소기업에게는 원천기술과 도면, 주형까지 내놓아야 거래를 허용한 다며 가져간 기술을 빼돌려 그들을 고사시켜버렸다.

대형유통재벌들은 납품업체의 팔을 비틀어 각종 할인행사의 비용과 판매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하였다. 그로 인해 생긴 경쟁력으로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임차상인의 일터를 빼앗으며 골목상권을 피폐케 하였다.

대리점들은 생산기업인 본사의 판매를 대리하고 있는 대등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세부사항까지 본사에 일상적으로 보고하고 밀어내기를 고스란히 받아들임으로써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복성 근접출점과 대리점의 고객정보까지 본사에 집중케 하였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판매수수료와 일수송금제, 24시간 영업, 밀어내기, 근접입점 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렇듯 재벌대기업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칙인 영업의 자유와 영업의 비밀마저 무너뜨렸던 것이다. 경제주체로서의 자주권은 재벌대기업만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가 삼성동물원, 엘지동물원이라는 재벌비판적인 용어를 쓰자 중간계급은 열광하였던 것이다.

그 열광은 경제민주화의 열망을 지퍼냈다. 2012년 총선에서 피어난 경제민주화 바람은 유통상인을 필두로 중소기업인들의 정치적 진출을 만들어내었다. 그러자 중간계급의 이탈이 가져올 결과를 읽은 박근혜 진영은 야권이 부르짖던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취임 4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운운하며 재벌대기업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중간계급의 진출은 쉽사리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중간계급의 진출은 노동계급의 진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고용, 파견노동자 등의 근로형태가 얼마나 잘못 된 것인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

보통 노동계급의 진출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던 중간계급이 오히려 노동계급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자본의 중간계급착취가 한도를 넘은 것도 있지만, 한국노동운동의 비전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노동계급중심주의에 매

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갑을전쟁은 상품생산사회에서의 경제주체들의 대등한 계약관계와 거래관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라는 가장 발달된 상품생산사회에서 근원적인 토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멈출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3. 되돌리려는 세력과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자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빵집, 편의점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등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센 을의 반발에 잠시 멈칫하며 내놓았던 양보책을 하나 둘씩 거둬들이고 있다. 갑과 을사이의 대등한 계약 거래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규제장치를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 추진에 편승하여 갑을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을들에게는 이전의 갑을관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겨우 경제민주화의 필연성을 믿고 여기까지 힘들게 자신들의 대등한 권리를 위해 싸웠는데 어찌 승복하겠는가. 이 을들의 함성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을의 정치’를 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을지로위원회가 화답하여, 을을 위한 정치의 전형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을들과 함께 오랫동안 을의 정치의 만개를 바란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을들과 함께 우리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을들이 대등한 경제주체로 우뚝 서 자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경제주체들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훈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을들이 대등한 경제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없음을 우리역사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촌각도 버틸 수 없음도 엄중히 경고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김남근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1. 왜 경제민주화인가?

군사독재정권의 랜드마크였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고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도도하게 흘러온 무차별적 규제완화, 시장자유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 전략의 결과를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보면 결국 거대한 재벌의 시장지배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일자리는 풍비박산 나서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이 만연하고, 쫓겨난 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진출하여 자영업이 비대해지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장자유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미명하에 사라지면서, 이제는 노무현 정부의 한탄처럼 정부도 재벌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보편화된 대량의 정리해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불과 15년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보호를 위한 고용형태 등의 규제의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기간제·파견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동규제완화의 결과 우리에게 닥친 850만의 비정규직, 400만의 근로빈곤층(워킹푸어), 400만의 실질실업자, 110만의 청년실업 등 참담한 현실에 봉착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철폐하고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폐지한 결과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식자재납품, 빵집·떡

집, 문구·공구·고물상까지 무차별인 중소기업인 영역침탈 등 재발이 시장을 독식하는 심각한 양극화로 나타났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를 풀어 대규모 PF대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순위채권 등을 예금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수많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완화”라는 선정적인 타이틀로 추진한 금융규제완화의 결과 안전상품을 팔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통화옵션상품(키코), 기업CP어음, 특정금전신탁 등 일반 금융소비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금융투기상품을 팔아 사건마다 수조원이 넘는 금융피해가 빈발하였다. 수출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고환율 정책 등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서민 생존권의 수호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모두의 살길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여야를 망라한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다.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 양극화와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 국민의 생존의 위기의 절규, 여기가 왜 경제민주화인가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절박한 요구가 반영되어 지난 2012년 대선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로 각인되었다.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우리 사회의 힘찬 개혁이 추진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 성과는 기대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국정의 기초를 급속히 선화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하다가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이다”라는 구호에 맞추어, 경제관료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형마트 진출과 영업규제 등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제도마저 이제는 철폐되어야 할 암적인 규제로 호명하고 있다.

II. 중단된 경제민주화 과제

1. 하다말고 중단된 갑을개혁

(1) 갑을개혁과 관련해서는 2013. 7. 2.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단체를 설립하여 가맹본부와 집단적으로 협상하여 상생협약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7. 가맹점거래에서 인테리어, ARS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2013. 10. 7. 대리점거래에서 판매장려금 방식으로 판매량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간 거리제한 규제를 철폐대상 규제로 발표하는 등 그나마 경제민주화 성과도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가맹점거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도 남양유업, 국순당 등 많은 대리점거래에서 본사와 대리점주 단체들 사이에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본사와 대리점주 단체들이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방식을 통하여 대리점주들이 불공정관계로 본 피해를 배상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이 주목을 끌었다. 그러한 이러한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을 근절하고 상생협약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을 제도화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교체를 앞둔 2014. 5.까지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대리점거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요구에 떠밀려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는 고시를 제정하였다.

(3)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법 개정이 2013. 7. 있었고, 2013. 7. 5.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업체에 판매/판촉사원 인건비 전가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4) 하도급 관계에서는 2013. 4. 30.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3. 6. 25.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필요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하도록

전속고발권 제도가 일부 보완되었다. 또한 2013. 8. 13.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서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절차 보완과 대물변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5)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을관계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가 최장 4년까지 걸리는 등 늦장 사건처리 시스템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 1997년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단 한 차례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민생사건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건에 일반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특정한 3가지 유형의 불공정 사건에만 도입되었고, 전속고발권제도도 폐지되지 않고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되었지만 199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찰총장이 단 한 차례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갑을관계를 개혁하겠다는 행정의지가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2. 유통분야에서 적합업종으로 확산되는 중소기업 보호

(1)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 대형마트의 진출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서구유럽과 같이 상업지역 외의 주거지역 등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이 진출규제가 아니지만, 독일의 매출영향평가제나 프랑스의 지역 상업위원회와의 협력 및 승인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진출규제를 위한 절차로 규정되기 보다는 진출 시 갖추어야 할 일정한 서류에 하나로 규정되어 대형마트 진출규제 수단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2) 2013. 7.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적합업종에 대한 진출규제 위반 시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조정 기간을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지정 논의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많은 업종과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을 기다리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규제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재벌·대기업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제도를 대표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의 규제로 공격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효력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경련 등은 2014년에 3년 효력기간이 종료 되는 84개 적합업종의 효력기간 갱신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제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3. 상가임차인 보호제도

2013.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사실상 사문화 시켰던 적용범위 제도를 보완하여 임차인이 법정기간 5년 내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악용하는 대표적인 규정인 재건축 시행에 관하여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상가임차인의 최대 피해 대상이 권리금 보호에 관한 제도보완이 되지 않고 있고, 상가임대차의 강행법규를 피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제소전화해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상가임차인 보호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4.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새로이 추진되어야 소비자보호 법제

동양증권사태, 키코사태, 우리은행 사태 등 대규모 금융피해자 사건이 빈발하면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 판매 등을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나, 금융감독의 행정권한을 잃지 않은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대규모 유출사태를 겪으며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신용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재벌그룹 내부의 신용정보 유통을 막으려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도 불완전하게 처리되어 여전히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재벌대기업의 담합과 불완전 상품으로 인한 제조물피해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도 여야간에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벌들의 반발로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5.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규제

(1) 2013. 12. 24.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순환출자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신규순환출자는 규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시행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려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이미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재벌의 기득권은 손대지 못하고 있다.

(2) 2013. 7. 2.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일감몰아주기(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혜자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 등이 신설되었다.

(3) 2013. 7. 2. 은행법 개정에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산업자본의 PEF 지분소유의 한도를 18% 및 36%를 10%와 30% 등 산업자본의 은행과 PEF 지분보유 한도를 낮추어 금산분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재벌그룹 계열 보험회사나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재벌그룹 계열 증권회사의 지배에 관한 금산분리 제도는 입법화 되지 못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서 재벌총수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사처벌조항인 횡령에 관한 형량이 강화되고 2013. 12. 19.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5) 그러나 재벌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제기요건 완화 등은 제도화 되지 못하였다.

II.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자유를 큰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용전략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제적 약자의 증가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전략으로 대체로 금융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전월세난이 심각하면 전월세 대출을 수월하게 하고, 각종 투기억제 정책의 해제로 집값이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수월하게 하여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예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부채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단기간에는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리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내수침체를 불러오게 된다.

OECD나 유럽연합은 과거의 부채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권고하고 있음.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면 가계의 부담을 낮추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일본 아베정부의 임금인상의 필요성 역설 등은 이러한 소득 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큰 방향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계의 부담을 낮추려면 가계부채의 원리금 채무조정의 활성화, 가계에 부담이 큰 고정 지출인 3대 가계부담인 주거비(월세), 교육비(대학등록금), 통신비, 의료비 등을 낮추어야 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계,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높이려면 재벌·대기업과 하도급 중소기업, 대리점, 가맹점,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입점업체 등 사이의 구조적 불공정거래 관계에 관한 해소하여 이들 업체의 소득을 높여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인 적합업종과 동네상권 진출을 차단하는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관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의 도입,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등 다양한 고용복지정책의 추진을 통해 working poor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종전의 “줄푸세” 식의 경제활성화 전략, 결국 “재벌·대기업과 투기자본”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기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에 맞서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대리점·가맹점·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 등 불공정 갑을관계에 있는 ‘을’등의 중소기업인 계층과 저임금의 비정규직 등 워킹푸어(working poor)계층의 소득을 높여 내수경제와 수출경제를 동반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제기되어야 한다.

끝나지 않은 갑의 횡포, 멈추지 않는 을의 눈물

이동주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아모레 퍼시픽, 아리따움 화장품 대리점, 가맹점 등

-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와 특정상품 구매강요, 영업지역 쪼개기 등을 일삼았던 아모레 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의 대리점불공정거래의 배상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그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시인하고, 피해배상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30여명의 피해대리점주와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음
- 특히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에뛰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맹점을 두고 서로간의 최저가와 1+1 경품행사 등 경쟁을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3조8954억 원을 기록한 서경배 회장은 연봉 19억에 주식배당만 155억을 받았다. 얼마 전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들과 아리따움의 가맹점주들이 단식농성을 10일동안 진행하면서 피해배상에 대한 성실교섭과 회사와 대리점, 가맹점주 간 상생방안을 거듭 촉구하고 있음

국순당

- 2009년부터 4년간의 목표 강제, 밀어내기와 영업지역 미보호, 냉동탑차 등 시설구입 강요로 인해 대리점주들의 손해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 감소에 따른 다양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급기야 일방적인 계약해지(이른바 H-project)를 시행함
- 전통주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배상면주가(대표: 배영호)에서도 발생함. 특히 부평영업소 대리점주의 자살(2013. 5. 13)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이후 배상면주가 대리점주들과의 상생방안이 협의되었으나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 2013년 10월 국정감사증인으로 소환되어 불공정거래 시인과 피해대리점주들과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국순당(대표: 배중호)측은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진행되던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원에 중재신청을 낸. 이후 피해대리점주들이 작년 검찰에 고소한 건으로 인해 국순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면 실시됨(2014. 5. 8). 그러나 아직 남양유업처럼 검찰에 의해 공정위 고발요청이 발동되고 있지 않음

멕시코나

- 멕시코나 치킨 가맹점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멕시코나 본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변경 (부당한 재료임가공비 책정)과 계약해지한 가맹점주들의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점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 함(2014. 1). 그러나 최근까지 계약해지 된 가맹점주들과 현직 가맹점들 위주로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정위 심결은 나오고 있지 않음. 그러는 사이 오히려 가맹점주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멕시코나 본사에서 형사고소 함

OB맥주 도매점 불공정거래 피해

- 시장지배적(독점적) 지위에 있는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관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각종 횡포를 저질러 주류 도매점주들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주류 시장은 주세법에 의해 면허업체를 중심으로 공급과 수급이 이뤄지고 있음. 2004년부터 OB맥주사의 카스맥주를 공급받던 오션주류(유)측에서는 2010년부터 카스맥주거래량이 크게 늘자 OB맥주로부터 부당하게 여신(담보)제공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음.(1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 이후 또다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받음) 특히나 매입대금 결제기간(RPC)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열배이상 담보제공을 강요하고, 급기야 소매점 거래처가 끊기게 된 상황에서도 결국 담보제공 여력이 여의치 않은 도매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술 출고량과 시기를 조절해서 결국 도산에 이르게 함. 2014년 5월 28일자로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업활동방해 및 불이익제공 등으로 신고하게 됨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불법행위 및 횡포 문제

- 일단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판매점들 역시 대표적인 ‘을’들로서 이동통신3사에 의해 많은 횡포를 당해왔음. 예를 들면, 대리점, 판매점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 행위, 소비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행위,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자행되어 왔음. 그래서 KT, 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피해자모임, 대리점협의회,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을 꾸려서 저항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본사와 집단 교섭을 실시하고 있음.
- 또 각종 불법행위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것은 이동통신 3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2014년 상반기 영업정지기간인 45일간 6천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보조금, 마케팅비를 절감하면서), 반면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을’들인 판매점·대리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황당한 현상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이동통신3사는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국 판매점, 대리점들이 이동통신유통인협회를 결성하여 수천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판매·유통시장에 대기업 양판점들과 대형마트들까지 뛰어들

들고 있어서 이 역시 중소기업인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통신사업은 대기업이 하더라도 소비자 직접 판매와 유통은 지금까지 대리점, 판매점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상도의이고 경제민주화일 것임. 역시 이동통신유통인협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닥칠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취소청구소송, 손해소송 등 법률 대응도 준비하고 있음.

KT의 경우는 특히 큰 문제, 국민기업이 아니라 국악(惡)기업²⁾ 행세

- 한편, KT는 최근까지도 잇따라 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거부하고 있고, 이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본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슈퍼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음. KT가 소비자를 기만해온 일은 7대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임.
- KT는 또 최근 기존의 대리점 옆에 직영점을 잇따라 개설해서 기존의 대리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대리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대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까지 이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대리점보호법 제정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지역 보호나 본사의 대리점 인근 직영점 출점 금지 등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할 것임.
- 또 KT는 국민기업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대규모 명퇴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온갖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KT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의에게도 큰 피해를 줘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 국민기업 KT가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대형마트의 지속적인 출점 및 변종 SSM 출현

- 평택같은 중소도시(도농복합도시)에 이마트 2호점과 3호점이 출점 예정, 수원 코스트코 출점 예정, 제천의 GS슈퍼마켓 3개 출점예정 등 여전히 전국 곳곳에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이 예정됨

2) 국민을 위한 국민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각종 악한 짓을 행사한다는 뜻의 비판임.

- 2016년까지 00개의 지속적인 출점 합의(유통산업연합회합의, 2013년 :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이 결성한 민간협의체)
- 이미 소매시장의 과포화를 넘어선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외식업과 의류아울렛, 문화레저업체들 까지 결합한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경쟁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라서 인근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려 함. 또한 개인소매업자를 상대로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빅마켓,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도매업)등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온라인 몰(인터넷 상거래)을 더욱 확장해서 도소매영역을 넓히고 있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사업’이 대표적 사례 (예: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이마트의 편의점사업진출 등)
- 그런데 최근에 공정위의 ‘경쟁제한조례’ 폐지안에 의무휴업일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규제, 대형마트 판매품목조정권고등이 포함되면서, 컨슈머워치 등 대형마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골목상권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입장을 발표함

문구업, 식자재도매업 등 골목상권 파괴

- 이미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문구점과 식자재도매업 등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와 CJ프레시웨이, 대상베스트코 같은 대기업들의 사업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신청(2013년 7~9월)을 내거나, 대형마트와의 판매품목 조정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의 적합업종 조정협의체 운영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일례로 문구소매업 경우는 상인들이 10일간의 노숙농성투쟁을 길거리에 진행하고 나서야 대형마트와의 적합업종 논의가 시작되었고, 식자재 도매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반대로 여전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에 전경련의 노골적인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싼 무용론 확산과 더불어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규제장벽이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추가로 적합업종 재지정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동반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이 잘 보이고 있지 않음. 경제5단체의 추천과 정부부처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로는 재계와 결탁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고물상, 알뜰폰 등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 위협

- 고물상의 경우 자원재활용의 선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법률로 인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입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각 지자체별로 고물상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을 강요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고물상이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환경보호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도, 또 생계형 고물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고물상은 도심과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맞으므로 즉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 또 고물상업에도 대기업 등이 뛰어들어 시장의 50%가량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고 일부 지자체는 고물상업을 직접 하려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함. 일단 고물상업 역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들의 시장 침탈을 막아야 할 것이고, 지자체는 기존의 생계형 고물상, 폐지수집 노인 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임.
- 또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알뜰폰(알뜰통신) 업종이라 할 것임. 지금 이동통신재벌 3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동통신 3사가 제조사들과 함께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들의 호소는 외면한 채, 갈수록 더 비싸지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나아가 그나마 중저가 요금의 대안 시장인 ‘알뜰폰’마저도 장악하려 하고 있음. 알뜰폰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시장 점유율5%를 넘어서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알뜰폰을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처럼 다시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담합이 재현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나아가 기존에 알뜰폰 28개 사업자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고사될 것이 분명한 상황임. 이는 경제민주화에도, 상도익에도,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모두 역행되는 만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임.
- 위에서 언급한 문구점, 도매상, 고물상, 알뜰폰, 휴대폰 유통업 등 최근에도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영역에 대한 침탈은 계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이 부분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영역으로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생존권 보장에 나서야 할 것임.

우체국 택배와 대리기사

- 전국적으로 1,830여명이 근무하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우정국과 소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통해서 재위탁을 받아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신세임. 건당 이뤄지는 수수료 (960원)를 받고 있었다가, 우정본부에서 작년부터 중량별(kg) 차등수수료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발표하였지만, 5kg미만 소포의 비중이 크다보니 거의 수수료 인상효과가 미미한데다가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의 차이를 속이는 경우까지 빈번하게 생기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또한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해고를 남발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타 지역의 우체국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불법적인 고용행태를 보임. 우체국 위탁택배조합에서는 5월 26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우월한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택배트럭 구입강제’와 ‘부당한 차량위탁관리비 지급 강요’등의 이유로 제소함
-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중개방식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음.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에 의해 콜을 받으면 대리기사들이 이용요금을 받은 후 콜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형태인데,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입금액 및 입금방식은 갑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요금경쟁을 부추겨서 비상식적인 요금을 책정하고 목적지도 숨기게 된 오더를 만일 대리기사들이 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벌과금을 물리고 있음. 또한 실제 납부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횡령하는 사례도 고발됨.
-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우도 협회(대리기사협회), 협동조합, 또는 노동조합형태로 조직화 되면서 최근에는 공정위에 프로그램사와 대리회사들의 불공정한 횡포를 고발하였고(2012. 11), 계속해서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얼마 전 SKT 통신사의 통신장애사고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곧 참여연대랑 소장을 제출할 예정) 기사권익보호차원에서 진행함. 대리운전업의 공정한 거래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대리운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이 투쟁 과정에서 프로그램사로부터 고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리기사들의 삶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관심이 지속되어

야 할 것임.

상가세입자 문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2013. 6), 환산보증금이란 규정으로 인해 상가임차인들은 조금이라도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임대료 폭탄 △계약갱신권 제한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또한 5년의 법정보장 기간이 짧다 보니 영업보장기간 내 상가권리금회수가 쉽지 않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영세한 임차상인들의 문제가 커지고 있음
- 또한 제소전화해조서라는 임차상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서약서가 비일비재하게 강요되고 있는 바,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요구됨
- 임차인의 영업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역시 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건물 재건축 혹은 매매 된다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보호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함

여전한 편의점주들의 투쟁과 기타 갑을 이슈

- 지면의 한계 상 다 담지 못했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갑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투쟁을 진행 중인 곳들이 있음. 농심 피해대리점주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고, 유한킴벌리 일부 대리점주들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또 상가세입자와 함께 대표적인 생활 속의 ‘을’인 주택 세입자들의 투쟁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음. 또한 각종 업종에서 갑을 문제로 인한 고통에 대한 상담과 제보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
- 또 갑을 관계의 대명사였던 편의점 가맹점 문제도 정부가 시행령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후퇴시킨 부분들이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CU편의점의 경우는 점주들의 허락도 없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서명 등을 위조해 관련 점주들이 이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기도 함. CU의 경우 지난 해 피해 가맹점주가 항의의 표시로 자살하자, 사망원인을 조작하기 위해(항의의 표시로 자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CU가 점주들의 공인인증서와 서명 등을 위조까지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임.

-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편의점 이슈, 가맹점 이슈를 포함한 각종 갑을 이슈에 대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이 땅에서 이룬바 ‘갑을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

<표1> 2013년 대기업의 불공정·불법·부당행위 관련
공정위와 금감원에 행정처분 및 민·형사소송 제기 현황

제목	진행사항
세븐코리아의 불법·불공정, 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진행중
멕시코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진행중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진행중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진행중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진행중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진행중
한국미니스톱의 정보공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위반 행위 고발	당사자 협의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진행중
KT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협의의 공정위 신고	진행중
호텔롯데(롯데월드)의 임차상인과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각서 조항 강제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진행중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제공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당사자 협의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	진행중
크라운베이커리 가맹본부 크라운해태그룹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당사자 협의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 신고	진행중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당사자 협의
CU편의점의 점주 사망진단서 위조, 변조 건에 대한 고발	벌금 처분
CJ대한통운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진행중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 비리 의혹 부실조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각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진행중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진행중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진행중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행법 위반 고발	진행중
(주)한국타이어가맹사업자 T-Station' 불공정행위공정위 신고	진행중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이사들을 피고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진행중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진행중

출처 : 참여연대 소송자료실

<표2> 2012~2013경제민주화-을살리기 주요 활동 현황

일시	활동 내용
2012-01-01	2012년 초부터 각계각층 싱크탱크·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비모임 활동 시작
2012-07-22	[기자회견] 롯데 불매운동 선포식 및 유통재벌 골목상권 독과점 반대 기자회견
2012-07-24	[여론조사]경제민주화 관련 국민 여론 조사
2012-08-10	[기자회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농성 발대식 및 기자회견
2012-08-16	[감사청구] 재벌유통업체 비호하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
2012-08-19	[기자회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철회 촉구와 경제민주화촉구-재벌대기업 탐욕 규탄
2012-09-06	[보도자료]전국중소상인·시민사회'중소상인살리기3대요구' 발표
2012-09-18	[기자회견]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2012-09-20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2-09-25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본조직 출범
2012-09-25	[기자회견]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및 대선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2-09-25	[소송]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판결 중 법원이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한 항소 제기
2012-09-27	[기자회견]의무휴업제도가거부,국내법무시'코스트코'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2012-09-28	[간담회]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및 경제민주화 정책 간담회
2012-10-04	[기자회견] 유통법 등 중소기업보호법 처리 촉구 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2-10-05	[기자회견] 홈플러스, 코스트코의 국내법 무시 규탄과 유통법-상생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2012-10-08	[보도자료] 중기청 사업조정제도 실태 결과 국감 자료 분석
2012-10-10	[소송] 이동통신 제조3사와 통신3사를 상대로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2-10-14	[기자회견] 코스트코 휴일 불법영업 강행 규탄 기자회견
2012-10-23	[토론회]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제도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공청회
2012-10-23	[신고/민원] BGF리테일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2012-10-24	[기자회견]지경부·체인스토어협회의 자율상생협약 반박 기자회견
2012-11-05	[신고/민원](주)한국타이어가맹사업인'T-Station'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
2012-11-14	[토론회] 문재인,안철수,박근혜후보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진단 토론회
2012-11-15	[집회] 중소기업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 국민대회
2012-11-15	[논평]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대한 논평
2012-11-16	[논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논평
2012-11-20	[토론회]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2012-11-22	[기자회견]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 촉구
2012-11-29	[논평] 영세제과업부 사망에 대한 추모 논평
2012-12-04	[신고/민원]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

2012-12-05	[논평] 공정위의 BGF리테일 '공정기업' 선정 비판 논평
2012-12-05	[성명]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처리 반대한 박근혜 후보 비판 성명
2012-12-12	[집회] 대기업 불공정 근절 촉구 전국자영업자 아우성 대회
2012-12-13	[기자회견]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편파적·비상식적 행태 규탄 항의방문
2012-12-30	[성명] 박근혜 당선인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반대 입장 비판 성명
2012-12-31	[논평] 지경위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논평
2013-01-16	[기자회견] 대통령 인수위에 요구하는 중소기업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3-01-17	[보도자료]이동통신3사의 담합 의혹 및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회신 반박
2013-02-27	[고소/고발] KT 이석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13-02-27	[보도자료] 마포 합정역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기업 상생안 합의 환영 보도자료
2013-03-08	[보도자료] 업무상배임 혐의 KT이석채 회장 측 변명반박 및 향후계획 설명
2013-03-11	[소송]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담배광고비 정산금(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제기
2013-03-14	[기자회견] 노동탄압·인권유린·7대경관국제전화사기·각종비리혐의 등 이석채 KT회장 퇴진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2013-03-14	[청원/발의] 대기업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근절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3-03-14	[보도자료]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해명 관련 편의점주·담배광고비 공익소송변호인단의 반박
2013-03-18	[기자회견] 청년 편의점주 죽음에 대한 추모 기자회견
2013-03-19	[신고/민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포함)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2013-03-21	[보도자료]가맹사업법개정안관련편의점가맹본부측왜곡보도에대한반박
2013-03-25	[보도자료] KT 이석채 회장 범죄혐의 입증할 중요 자료 검찰에 추가 제출
2013-03-26	[기자회견] 문구 생산·유통인 생존권 호소 기자회견
2013-03-26	[토론회]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2013-03-28	[기자회견] KT이석채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배임혐의·7대경관 사기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엄벌 촉구 회견
2013-04-02	[기자회견] 서울시 유통재벌 판매품목 제한 권고 추진 논란에 즈음한 중소기업·시민사회 기자회견
2013-04-02	[토론회]편의점불공정사례보고및가맹사업법개정토론회
2013-04-04	[토론회]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품목 지정 제도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2013-04-09	[논평] 서울시의 대형마트·SSM 판매품목 제한 권고 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
2013-04-16	[기자회견] 롯데의 만·형사소송 취하 촉구 및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 촉구 의원·중소상인·시민사회 기자회견
2013-04-18	[기자회견] 가맹점사업자단체 보장 촉구 및 편의점가맹점주 5대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13-04-22	[토론회] 유통재벌대규모점포(대형마트·SSM 등), 무엇이 문제인가?
2013-04-23	[감사청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불법비리행위 비호 의혹 금융위·금감원·국세청·검찰에 대한 감사청구
2013-04-23	[논평] 국회 정무위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 개선 의지 환영 논평
2013-04-24	[성명]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관련 업계 반박에 대한 성명
2013-04-25	[기자회견]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 시민·청년·소비자 기자회견

2013-04-29	[기자회견]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즉시 복직 및 각종 불법·비리 이석채 KT회장의 즉시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3-05-05	[논평] 국회정무위 가맹사업법 즉시 통과 촉구에 대한 논평
2013-05-06	[기자회견] 중소기업·자영업인 생존권 보호 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3-05-06	[토론회] 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2013-05-06	[성명]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촉구 성명
2013-05-08	[성명]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성명
2013-05-09	[토론회] 국회 경제민주화관련 입법과제 긴급점검 및 평가 토론회
2013-05-15	[기자회견] 남양유업 사태 피해자 추가 고발 및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3-05-16	[기자회견]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추도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3-05-16	[기자회견] 슈퍼갑 횡포 즉각 해결과 입법 호소 기자회견
2013-05-16	[논평] 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논평
2013-05-22	[기자회견]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출범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3-05-23	[기자회견] 편의점주 자살 추모 기자회견
2013-05-23	[논평] 상가건물주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논평
2013-05-24	[보도자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와 남양유업 간 2차교섭 결과에 대한 입장
2013-05-27	[기자회견] CU점주 3명 자살 관련 유족 측 입장 발표 및 BGF 리테일 홍석조 회장 고발 계획 발표
2013-05-28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 대회
2013-05-29	[고소/고발] CU홍석조 회장과 최고책임자 편의점주 사망에 대한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
2013-05-30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대책 마련 및 대기업-임차인 상생 촉구
2013-05-30	[논평] CU편의점주 자살 사태 관련 CU측 입장에 대한 논평
2013-05-30	[성명] 용산개발 공익보도자료 기각에 대한 성명
2013-05-31	[기자회견]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추가 피해 증언 및 신속한 교섭 타결 촉구 기자회견
2013-06-02	[기자회견] 농심특약점 불공정행위 및 롯데마트 납품업체 ‘미폐’ 피해 사례 발표회
2013-06-03	[신고/민원]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2013-06-03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3-06-04	[기자회견] 전국 ‘을’ 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2013-06-09	[집회]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국민문화제
2013-06-13	[기자회견] 새누리당에 대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3-06-16	[기자회견] 크라운베이커리, 상품공급점 등에 대한 피해사례 발표회
2013-06-17	[기자회견] 두 번째 롯데 세븐일레븐편의점주 사망 추모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5대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13-06-19	[기자회견] 6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3-06-19	[기자회견] 남양유업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기자회견
2013-06-20	[신고/민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해태그룹을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신고
2013-06-25	[기자회견] 롯데재벌 피해자모임 결성 및 사태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13-06-27	[기자회견] KT사옥 항의방문 및 이석재 회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2013-06-28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 규탄 기자회견
2013-07-03	[기자회견]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사태 해결 및 요구안 수용 촉구 각계 공동입장 발표
2013-07-04	[기자회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 관한법률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환영, 향후 과제 발표
2013-07-08	[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성명
2013-07-10	[신고/민원]공정거래위원회에 미니스톱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공동 조정 신청
2013-07-15	[신고/민원] 공정거래위원회에 화장품업계(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013-07-18	[기자회견] 미니스톱 불공정행위근절 3불정책 10대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13-07-24	[기자회견] 화장품 업계 불공정 피해사례발표회
2013-08-06	[기자회견] ‘자원순환전환촉진법’ 제정 반대 및 고물상 생존권법안‘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촉구 기자회견
2013-08-06	[기자회견]대형마트·백화점등대규모점포입점,납품업체피해사례발표회
2013-08-07	[기자회견] 국순당 본사 항의 방문 및 각계 규탄 기자회견
2013-08-08	[기자회견] 토니모리 본사 항의방문 및 피해점주들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13-08-12	[기자회견] 미니스톱 본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비판 및 어용조직화 규탄 기자회견
2013-08-13	[기자회견] 국순당 본사 2차 항의 방문 및 각계 규탄 기자회견
2013-09-04	[기자회견] 대형마트, ssm 등 유통재벌 불공정행위 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2013-09-04	[기자회견] 미니스톱-가맹점주 5차 교섭 결렬 관련 미니스톱 규탄 기자회견
2013-09-09	[기자회견] 우정본부의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규탄 및 택배기사비대위와의 교섭 촉구
2013-09-12	[기자회견] 태광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불법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 기자회견
2013-09-16	[고소/고발] 미니스톱 상대로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
2013-09-24	[기자회견] 롯데 세븐일레븐의 편의점주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 규탄 기자회견
2013-09-30	[소송] SK텔레콤과 KT상대로 저가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3-10-01	[기자회견] 우정본부에 대한 직접 택배 계약 및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
2013-10-01	[기자회견]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50% 축소 철회 피해점주-정당-시민단체 합동기자회견
2013-10-01	[신고/민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순당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013-10-10	[기자회견] 아모레퍼시픽 사장 국감 증인채택 환영 및 면담 요구 불응하는 아모레퍼시픽 회장 규탄 공동 기자회견
2013-10-10	[고소/고발] 이석재 KT 회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2차 고발
2013-10-11	[기자회견] 미니스톱 불공정횡포 규탄 및 공정위 고발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3-10-14	[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평
2013-10-17	[기자회견] 이석재 KT회장 국정감사 출석 촉구 기자회견
2013-10-17	[보도자료]미니스톱 상생협약 타결에 대한 입장 발표
2013-10-20	[기자회견] 롯데편의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문제점 종합 기자회견

2013-10-22	[기자회견]대리점보호법 제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 촉구 퍼포먼스·기자회견
2013-10-22	[보도자료] 현대아이파크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결정
2013-10-23	[신고/민원] 공정거래위원회에 YBM 한국토익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약관심사청구
2013-10-23	[논평] KT 압수수색에 대한 공동논평
2013-10-24	[보도자료]이석채 KT회장의 부동산 헐값 매각과 부실기업 M&A 관련자료 분석
2013-10-25	[보도자료] 세븐일레븐, CU편의점본사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반박 및 고발요청
2013-10-31	[보도자료] 이동통신비 폭리 및 원가공개 이슈에 대한 입장
2013-10-31	[신고/민원] 공정위에 토익학원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신고
2013-11-04	[성명] KT이석채회장 사퇴 표명 관련 성명
2013-11-12	[기자회견] KT 이석채 회장 사퇴와 관련한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3-11-19	[신고/민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멕시코나의 불공정행위 신고
2013-11-20	[의견서] 가맹점주의 피해예방 및 분쟁 해결책 미흡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3-11-20	[신고/민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코리아세븐 신고
2013-12-11	[기자회견]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3-12-18	[보도자료] 공정위, (주)토니모리의 ‘보복출점’ 불법 인정해 시정명령 조치
2013-12-19	[기자회견] 국순당으로부터 고소당한 대리점주들의 경찰 출석 전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3-12-19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안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2013-12-27	[성명] 헌법재판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법을 합헌 결정 환영 성명
2013-12-31	[성명] 갑을관계 개혁 제1법안인 대리점법 등 주요 민생입법 처리 무산 규탄 성명
2013-12-31	[논평] 전국 최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폐점 조치에 대한 환영 입장 및 경제민주화의 상징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의 대 홈플러스 투쟁의 성과 발표

출처 : 참여연대 자료실

공정위 평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근절 과제 이행 및 의지 평가

장흥배 / 참여연대 경제금융팀장

1. 배경

- 박근혜 대통령의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 시작되는 2013년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 근절을 위한 다수의 국정과제 제시
- 2013년 시민사회의 ‘갑을개혁운동’ 진행 과정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불공정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안이 부상함
- 남양유업 사태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불공정근절을 핵심 업무로 하는 공정위의 국정과제 이행 실적, 불공정 근절 의지, 과제들을 평가하고자 함

2. 공정위 불공정 근절 추진 현황

1) 2013년 공정위 업무보고

표 <공정위 2013년 업무보고 중 불공정근절과제 이행평가>

추진 과제	이행시기	평 가
중기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 부여	2013. 6	• 2013.4. 하도급법 개정, 11월 시행 • 용역서비스 대상 제외, 수급사업자 범위를 조합원에 한정해 원사업자들이 비조합 업체 거래 선호 가능성 등 실효성부족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 방지	2013. 6	• 2013.7. 하도급법 개정, 2014.1. 시행 • 법 개정 이후에도 불공정특약 강요 여전한 것으로 확인³⁾
인테리어 비용 등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013. 5	• 2013.6. 표준계약서 개정 • 표준계약서 개정 이후 백화점 업체들이 입점업체들과의 재계약 거부하고 퇴출시키는 사례 빈발
판촉사원 파견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2013. 6	• 2013.6. 가이드라인 제시, 2013.12.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실시, 2014.3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판촉사원 파견 및 비용전가 강요 등 조사결과 바탕으로 제재하기로 했으나 제재실적 거의 없음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 개선	2013. 6	• 2013.10.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의결하고 의결 이후 바로 시행 • 심사지침 의결 이후 제재 사례 거의 없음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감시 강화	2013.12	• 2014.3.26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개했으나 제재 강화만 얘기하고 제재 실적은 미미
가맹사업법 개정	2013. 6	• 2013.7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 2014.2 국무회의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심야영업시간대 확대, 허위과장정보 제공 차단을 위한 예상매출액 완화와 단서조항 삽입,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 후퇴, 주요 개혁조항의 3년 일몰조항 신설 등 법률안 취지를 대폭 훼손시킴
사기성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2013.12	•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없었음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기성 가맹점 모집 제재 대상을 가맹점 규모 5인 이하로 축소하고, 이후 제재 실적 없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2013. 6	• 2013.6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의 취지는 피해 당사자나 공익 시민단체도 검찰 고소·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나 통과된 내용은 감사원, 조달청 등 정부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

3)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2013년 4분기 실태조사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2013. 6	• 2014.5월 현재 법 통과 안됨 • 대통령 공약은 원래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였으나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마저 통과 안 된 상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2013. 6	• 2013.6.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제가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하도급법의 기술탈취에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제를 다소 확장한 수준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	2013. 6	•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 포함됐으나 하반기들어 공정위가 부작용 우려하며 소극적으로 돌아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작성

2) 갑을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근절 대안에 대한 공정위 입장

공정위 업무보고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의 ‘갑을개혁운동’ 과정에서 공정거래사건 처리기간 단축, 공정위 권한의 분산과 위탁,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과 같은 이슈 부각

- 공정거래사건 처리기간 단축
 - 2013. 8. 26.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⁴⁾에서 사례 발표로 나선 대다수 불공정 피해자들이 사건처리에 최대 4년이 소요되는 공정위의 느장처리가 집중적인 원성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제기.
 - 정부는 ‘비정상적 정상화 10대 과제’로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⁵⁾을 선정하고, 지연 처리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일련의 절차를 시행 중.
 - 그러나 사건처리 지연의 핵심은 비대한 권한을 유지하려는 데 따른 인력과 예산의 한계임을 감안할 때 사건처리 시간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공정위 권한의 분산과 위탁
 - 공정위는 반독점 역할에 집중하고 불공정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상당 부분 위탁해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업무 하중도 덜어주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
 - 2013. 5. 민병두 의원이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사건 조사권, 분쟁조정권, 검찰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소위 ‘갑

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65618> 참조

5) <http://pmo.go.kr> <파일명 131210_비정상적정상화추진(국무회의)_보도자료(최종).hwp 참조>

을관계 3법' 개정안을 발의함

- 공정위는 '밥그릇지키기'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여 법안 논의 이뤄지지 못함
- 대리점특별법 제정
 -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관계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크게 부각
 - 대리점관계에서도 일반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013.5. 이종걸 의원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 공정위가 법 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법안 진척 안 됨

3. 평가

1) 2013년 업무보고 과제 평가

- 불공정근절을 위한 공정위 업무보고 과제의 이행 자체는 대부분 이행
- 문제는 제도개혁 이후 실효적 규율을 위한 단계에서 상당히 후퇴하거나(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실태조사 이후 제재실적이 미미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거나(판촉사원 파견 가이드라인, 판매장려금, 사기성 프랜차이즈 단속 등), 제도개혁 자체의 추진 의지가 실종됨(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2) 2014년 업무보고 중 불공정근절 과제 평가

- 2014. 2. 20 공정위 업무보고 문구는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임
- 즉, 경제민주화 과제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라 불공정근절 과제의 제시도 2013년 기준으로 15개 내외였던 것이 2013년에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유통 대리점 하도급 분야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근절, IT 등 신성장분야 불공정관행 시정 등으로 대폭 축소됨

3) 종합 평가

-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완성론’을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에 맞춰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하거나 기 이행된 경제민주화 과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함
- 2014년에 제시된 불공정근절 과제는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이 아니라 매년 진행해 왔던 연례적인 사업으로 축소됨

지방자치단체의 갑을개혁 정책과 역할

안진걸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⁶⁾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각 기초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원룸텔 확충, 전세보증금보장센터 운영, 서민 전월세비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공정임대료’ 제도 선도 시행 및 중앙정부에 대한 법 개정(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 상가관리금 문제 해결 등) 적극적 요구
- 각 지역의 상가임차인 조직, 주택임차인조직, 주거협동조합, 상인회 등 당사자 조직 지원

2.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기구 설치 등 청년, 중소기업,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운영, 청년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실시 등 청년 지원 정책 시행
-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기구 운영, 지자체 차원에서의 갑을문제-하도급 불공정

6) 갑을 1년, 지자체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약자인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중소기업, 주택세입자 부분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문제 개혁·개선 정책 시행과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 센터 운영

-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저지 정책, 대형마트와 SSM의 상생품목제도 시행 권유,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권 발행, 문구점·고물상·동네슈퍼 등 지역 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등

3. 특히, 지자체별로 반드시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골목상권, 설 자리가 없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신세계이마트의 복합쇼핑몰 6곳이 신규 출점하였고, 신세계는 편의점 사업에도 진출을 선언했음. 중소도소매 시장 파괴하는 대기업의 상품공급점(변종 SSM) 660여개가 출점했고, 재벌대기업들의 유통산업연합회, 평택시 이마트 2호점 포함 대형유통업체 21곳의 신규 출점을 확정했음.

- 통계청은 2014년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을 46조 6천억으로 전망함. 하지만 전통 시장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 동안 1,857개에서 340개가 줄었고, 매출액도 40조원에서 24조원으로 감소했음.

- 대기업이 창업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성 고액예상매출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신규출점 등을 하여 극저매출 가맹점들이 생겨났음. 폐점을 하고 싶어도 고액의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부터 점포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적자운영을 감수해가며 점포를 운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음.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대기업들의 독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대통령은 '경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2013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의 진출로 인해 상품공급점 주변의 중소 슈퍼마켓 매출액이 69.4% 감소했고, 응답자의 25.7%는 30%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음. 상황이 이러하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의장으

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역순회 행사에서 “도소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 정책”을 발표하며 현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재벌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퇴출 전략을 쓰겠다고 하니 중소기업인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1)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참여형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함.

현재 정부 정책 중에는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나 골목상권 몰락에 관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음. 정부는 먼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자영업자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집행·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경제정책 개발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함.

2) 또, 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을' 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함.

경제 주체 간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 피해상담센터(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 비정규직, 청년층)'도 필요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와 피해를 줄이는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소상공인 창업지원,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을'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함.

3)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에 나서야 함.

-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급증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대기업간의 과당경쟁은 경제의 비효율을 야기함. 지금 유통업과 자영업이 처한 상황은 정부가 제때에 대기업의 과다진출을 규제하지 못해 나타난 시장실패의 결과임.

- 현행법은 대기업이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대기업 슈퍼마켓(SSM)등)에 대해 등록제와 영업시간 제한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정부 정책은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음.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같은 법안이 개정되어도 규제 수위가 낮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대기업은 점점 중소자영업자 시장영역에 진출해 중소자영업자의 시장 기반을 잠아 먹으며 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음. 대형마트의 동네상권 침탈은 그런 현상의 단면일 뿐이고, 식자재 납품·도매·공구·문구 등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한 침탈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내에 (준)대규모점포들이 난립해 지역 상권의 피해가 심각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대형마트·대기업 슈퍼마켓(SSM)과 전통시장, 골목 슈퍼 등 지역 경제 주체 간에 상생을 위한 품목을 지정해 대형마트 등에 판매 제한을 권고해야 함. 아울러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와 대기업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면 지역주민의 소득이 지역 바깥으로 유출됨. 이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위축과 지역상권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판매와 소득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음.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 방식을 지역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대상 범위를 넓혀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

4. 중소기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의견을 내야 합니다.

1) 의무휴업일제 확대에 관한 정책

- 중앙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청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 취지에 비해 개정된 내용이 매우 미흡함.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야간영업(오후 9시 이후, 최소 10시 이후)과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중소기업인들의 틈새시장을 마련해 주고 유통 산업 근로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을 보호해 주어야 함. 이를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관련 법률의 재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를 도모해야 함.

2)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정책

- 중기청에 유통분야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 일체 이양 요청

현재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는 서울시가 사업조정심의를 제외한 사업조정접수, 사전조정협의회 운영, 사업조정 내용 통보 및 공포를 하도록 돼 있음.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조정심의 권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음. SSM뿐 아니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 분야의 경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사업조정심의 권한을 모함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행사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합리적인 사업조정을 도출해 내기 용이할 것임. 따라서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중소기업청)에 요청하여 유통분야의 사업조정권한 일체의 이양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SSM 사업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서울시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 데, 제출 시 중소기업인들의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의견(3년간 사업 진출 유예, 1차 식품에 대한 품목 제한, 토·일요일 영업시간 제한) 피력이 필요함.

3)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정책

- 지자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조사·발표

지자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해당 기업에 사업 진출 자제 및 철수를 요청해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즉시 지정 요청

지자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 활동을 즉각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초토화 행위를 제한해야 함.

- 중앙정부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질적 법제화 요청

2011년 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돼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력이나 행정력의 뒷받침이 없음. 따라서 중앙 정부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의 제·개정을 요청해야 함.

- 풀뿌리 중소기업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함.

규모가 큰 단체 또는 관련 성격의 단체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풀뿌리 중소기업 단체를 정책과 행정의 파트너로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것이 지역경제,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부합할 것임.

(풀뿌리 상인단체 예 : 송파강동 생활용품도소매사업협동조합, 마포상인회총연합회, 전국상가세입자협회, 홍대앞건고싶은거리상인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 등)

※ 별첨 1 :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인 정책 현황 조사 결과 요약
(서울시 각 부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7)

□ 전통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여 골목상권 중소기업인에게 싼 가격에 물품 공급
 - 1,308개 점포 회원 등록 및 406개 점포 발주
 - '13.3~'14.2월까지 총 매출액 5,631백만원
- 대형마트·SSM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상생기반 조성
 - 서울시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시행
(영업제한 : 0~8시, 의무휴업 : 둘째·넷째 일요일)
 - ※ 개정된 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 개정 중이며 상반기('14) 내 새로운 처분
시행 예정
 - SSM과 골목상권간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 (116건 신청 113건 조정완료)
- 전통시장 상인역량 및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 설·추석명절 및 권역별 이벤트 및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운
영(352개 시장)
 -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주경야독 프로젝트(33개 시장, 1,236명 수료)
 - 경쟁력 있는 상품군 발굴·육성을 위한 시장닥터 프로그램(11개 시장)
- 16개 자치구 51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2~'13년)
 - 주차장·아케이드 설치·보수 : 수유재래시장 등 12개 시장
 - 화장실·고객지원센터 설치 지원 : 화곡중앙골목시장 등 4개 시장
 - LED조명, 전광판 설치 등 : 풍납시장 등 35개 시장
 - ※ 181개 시장 20,627개 점포 전기 안전점검 및 배선정비

7)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정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상의 한계로 서울시의 정책을 조사·취
합하였습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가버넌스(희망경제위/풀뿌리경제특위 등)

- 희망경제위원회 발족 및 전체회의('12.12.3)
 - 처리안건 : 공동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운영세칙(안) 수정 의결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산업경제분과위원회 회의('13.2.18)
 - ▶ 경제비전수립, 동북권 균형발전전략수립 등 주요사업 자문
 -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회의('13.2.4)
 - ▶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등 자문
 - 생활경제분과위원회 회의('13.2.26)
 - ▶ 지방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분야 등 자문
 -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회의('13.1.23, 2.19, 4.2, 7.23, 11.12)
 - ▶ 1회 :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 지정 등 자문
 - ▶ 2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건의 사항 자문
 - ▶ 3회 : 2030 서울플랜 “산업·일자리분야”에 대한 자문
 - ▶ 4회 : 2030 서울 경제비전 수립에 따른 자문
 - ▶ 5회 : 소상공인지원과 업무추진현황 보고 및 자문
- 운영위원회 회의('13.1.9, 2.5)
 - ▶ 1회 : 분과위원회별 2013년 운영계획 수립 등
 - ▶ 2회 : 분과위원회 회의시 공통 아젠다 고민 등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체결 지원
 -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구성('12.12.3) 및 자문회의 개최('13.1월, 2월)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13.1.23 공포)에 건의내용 일부 반영
 - 영업개시 30일전 사전예고제 실시
 - 영업제한 대상에 대규모점포 내 입점 대형마트 추가
 - 영업제한 위반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조항 신설, 과태료 상한 확대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간 상생협력 지원

- 대규모점포 입점지역 주변 상권영향조사 실시 자치구 제공(시 → 마포구·중랑구)
- 홈플러스 합정점과 전통시장 상인간 사업조정 중재
 - ▶ 망원월드컵시장 홈플러스와 사업조정 자율 협약 : '13.2.27
- 홈플러스 상봉점과 전통시장 상인간 사업조정 중재
 - ▶ 우림시장 홈플러스와 사업조정 자율 협약 : '13.11.15
 - ▶ 동원시장·동부시장 홈플러스와 사업조정 자율 협약 : '13.12.17

□ 소상공인·자영업체 자생력 제고 방안 지원

- 소상공인 지역밀착 종합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 창업, 경영개선, 업종전환과정 등 17,296명 교육
 - 창업자금 지원 : 5,005건 1,118억원 융자추천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 15개소('11년) → 17개소(도봉,금천,'12.4)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사업 확대 및 강화
 - 자영업 협업화 사업 발굴지원 : 7개 협업사업 26개 점포 지원
 -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 '13.2.7 개장
 - 슈퍼닥터 컨설팅제 운영 : '13년 상반기 80개, 하반기 80개
 - 서민 생계형 자영업 특별지원 : 자영업 점포 260개 선정 및 지원
 - 자영업「현장컨설팅단」운영 : 컨설팅 750회 지원
- 소상공인진흥지구제 도입·운영 및 중소상공인 살리기 전담기구 설치
 - 중소상인지원 전담기구 구성·운영 :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구성(11명)
 - 소상공인특별진흥지구제 도입 및 시행 : 제도 도입을 위한 T/F팀 운영

□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지하철 1, 2호선)
- 상담인력 : 전화상담 1명, 방문 및 인터넷상담 1명(※4월부터 서비스 시작)
- 주요기능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 상담내용 : 계약관련(3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관련(16%), 임대료/보증금

(16%), 권리금/원상복구/하자보수 등(17%), 중개수수료 등(7%), 기타(9%)

▶ 상담방식 : 전화/팩스상담 97%, 방문상담 3%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로 접속

□ 민생침해근절대책과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 민생침해 모니터링 강화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 '12년(3~12월) 42,450건, '13년(5~12월) 28,669건
- 피해예방 홍보활동 : 지하철, 전광판, 반상회보, 인터넷 언론매체 배너 등
- 분야별 맞춤형 예방교육 : '12년(3~11월) 17,817명, '13년(4~12월) 24,000명

○ 집중점검을 통한 민생침해 근절 추진('12~'13)

- 대부업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 실시 : 1,721건 행정조치

※ '12년 695개소 점검, '13년 2,966개소 점검

- 다단계, 직업소개소, 부동산중개업소, 상조업체 등 점검 및 단속

○ 민생침해 구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 서민금융 관심 변호사 15명

※ 온오프라인 상담실적('12. 8월 ~ '13. 12월) : 총1,341건

-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개소('13. 5. 10) : 매주 금(09:00~18:00)

※ 온오프라인 상담실적('13. 5월 ~ 12월) : 총137건

○ 민생침해 경보제 운영(신규)

- 추진배경 :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대출사기, 불법스팸, 스미싱 등 사기형 민생 침해 급증
- 경보방법 : 市홍보매체(홈페이지, 라디오, SNS, 뉴스레터 등) 통해 경보발령
- ('14.2.24.) 소치올림픽 스미싱 주의경보 발령, ('14.3.18.) 저금리 대출사기 주의경보 발령 등

박근혜 정부
1년은

과연 을의 눈물 멈추었나? 갑을개혁 투쟁 1년을 평가한다

경제민주화 폐업신고/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규제완화 강행

2014. 5. 28(수) 오전 11시 전경련 앞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